

##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· 분할납부 [ ]승인 [ ]불승인 통지서

납부 의무자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)	생년월일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)	전화번호

부과일자	부과기간	부과금액	분할납부금액	차감부과금액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	--------

분할납부 허가 및 불허가사유	분할횟수	납부기한	분할납부금액	불허가사유
	1차	. . .		
	2차	. . .		
	3차	. . .		
	4차	. . .		
	5차	. . .		
	6차	. . .		

「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특별(광역)시장 · 도지사

직인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### 유의사항

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그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1.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
2.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3.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